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가단1263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이은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이석기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기

변론 종결 2024. 8. 28.

판결 선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53,829,6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829,6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98,239,1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39,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

-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E-F호에서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2) 원고는 2018. 8. 4.경 C와 위 음식점에 관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2,000,000원으로 하되 계약 체결 시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 기성에 따라 중도금 33,000,000원을 지급하며 제품 시운전 시 잔금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원고는 2018. 8. 8.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의 요구에 따라 2018. 10. 6. 추가로 중도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4) C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무렵부터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당시 시스템 에어컨 28대는 설치되었으나 실외기 등 부대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31.경 주식회사 H과 계약금액을 58,3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 5) 원고는 2022. 5. 31.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2308호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73,000,000원(= 40,000,000원 +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분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2. 9. 30. 'C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2.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2. 10. 19.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C는 2018. 8. 23.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8.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행 근저당권 등의 설정 및 말소

1) 한편, 이 사건 증여가 있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되어 있었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을구 순위 2, 5, 7번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2, 5, 7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9	압류	2017. 8. 2. 제108729호	2017. 8. 2. 압류	권리자 국 처분청 북대구세무서
---	----	----------------------	----------------	------------------

2	I조합	C	2015. 3. 19. 제59737호	2015. 3. 17. 설정계약	104,000,000
5	I조합	C	2016. 5. 10. 제75424호	2016. 5. 4. 설정계약	91,000,000
7	J	C	2018. 7. 27. 제120974호	2018. 7. 27. 설정계약	30,000,000
합계	225,000,000				

2) 이후 이 사건 압류등기는 2019. 7. 5.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2, 5번 각 근저당권은 2020. 2. 18.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7번 근저당권은 그에 앞서 2020 2. 12. '2020. 2. 11.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3) 피고는 2021. 10. 6. K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K는 2021. 1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공시송달 판결로서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이상 따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주위적 청구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게 2018. 8. 8. 40,000,000원, 2018. 10. 6. 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C의 기망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조로 지급한 73,000,000원(= 40,000,000원 + 33,000,000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인바, 수익자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 C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시스템 에어컨을 공급하고 일부 공사를 하였기에 그에 관한 부분은 원고 주장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의 내용을 보면, 원고가 C에게 C의 기망에 기하여 2018. 8. 8.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한데 이어, C가 공사를 얼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실외기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기망에 기하여 2018. 10. 6.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중도금 지급 관련 불법행위는 이 사건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기망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계약금 지급 관련 불법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 관련 40,00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18. 8. 8., 중도금 지급 관련 33,00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18. 10. 6. 별개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 중 중도금 지급 관련 33,000,000원에 관한 부분은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일인 2018. 8. 23. 이후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8. 8. 23. 당시 위 33,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33,000,000원에 관한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2.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있는 2018. 8. 2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가 소유하였던 유일한 부동산인바,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직후 이 사건 증여에 기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C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세금 체납에 기한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체납액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무자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L, M에 대한 각 감정축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8. 8. 23. 기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시가 감정평가액은 각 202,740,000원, 89,102,400원 합계 291,842,400원(= 202,740,000원 + 89,102,400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선행 근저당권인 채권최고액 합계 225,000,000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8. 23.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제2, 5, 7번 근저당권이 각 80,000,000원, 70,000,000원, 30,000,000원으로 합계 180,000,000원(= 80,000,000원 + 70,000,000원 + 3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I조합에 대한 대출이자 채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8. 8. 23. 당시 C가 I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조세채권에 기초한 북대구세무서의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8. 23. 당시 체납액은 14,934,350원 상당이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북대구세무서 체납 압류액 59,636,200원을 2019. 7. 5. 피고가 변제 후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59,636,200원은 2023. 5. 10. 기준 C의 북대구세무서 관할 체납액으로 보일 뿐(이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참조) 2018. 8. 23. 당시 체납액이 14,934,350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93,000,000원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특약사항에 "1층 전세 2건 93,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년여 전인 2014. 6. 29. 이루어져 이후 임대차 계약관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2021. 10. 6.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1층 2가구 중 한 가구의 경우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20,000원, 나머지 한 가구는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위 계약관계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8. 23.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9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8. 8. 23. 당시의 시가 291,842,4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80,000,000원,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채권액 14,934,350원 합계 194,934,350원(= 180,000,000원 + 14,934,350원)을 공제하였을 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존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가 2021.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시 앞서 본 바와 같이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 8. 2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3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탁재산 반환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돈으로 매수한 피고의 소유로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와 피고의 자녀인 N 명의 계좌의 돈이 피고 소유라고 볼 증거는 없으나, C는 2013. 6. 29. O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28,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C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증여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의 소유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피고가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와 피고 사이에 'C가 대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피고만이 소유자의 권리를 보유하며,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 이후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2.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2023. 11. 17. 기준 원금 40,000,000원에 이자 13,829,687원¹⁾을 더한 53,829,687원(= 40,000,000원 + 13,829,687원)이 피보전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53,829,687원이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전대, 감정인 M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4. 8. 5. 기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시가 감정평가액은 각 386,880,000원, 87,930,000원 합계 474,810,000원(= 386,880,000원 + 87,9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8. 28. 당시의 시가는 그와 비슷한 금액이거나 다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여기서 앞서 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더라도 그 남은 잔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53,829,687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829,6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53,829,6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이훈

별지

1) = 2018. 10. 6.부터 2022. 8. 5.까지 이자 7,665,753원[= 40,000,000원 × 5% × (3 + 304/365)] + 2022. 8. 6.부터 2023. 11. 17.까지 이자 6,163,934원[= 40,000,000원 × 12% × (1 + 104/366)]